교육부 공고 제2025-229호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학협력단의 회계기준은 산학협력단의 운영 상황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산학협력단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불필요하게 부담을 부과하는 기준이 있다면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야 함.

이에 따라 산학협력단별로 상이하게 적용 중인 기준을 일원화하는 한편, 각종 명세서의 수정·보완을 통해 회계처리기준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학협력단의 재물조사 실시주기를 정하여 현장의 적용기준 일원화 (제28조 제4항 신설)

나. 유·무형자산별로 적용하여야 하는 내용연수를 정하여 현장의 적용기준 일원화(제32조 제4항 신설)

다.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 상 각종 계정과목 및 그의 해설내용 수정·보완 ([별표2]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운영계산서 과목 및 서식 개정)

라. 연구안전·보안 시설·장비에 대한 지출을 기록할 수 있도록 연구실 안전·보안 자산 및 (감가)상각비 명세서 신설([별지 3의17])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parkal5887@korea.kr
- 팩스 : 044-203-6485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전화 044-203-62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고시 제 호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일부개정고시안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학협력단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별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다.

제38조제1항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지식재산권 수익명세서 [별지 제4호의2서식]"를 "기술이전수익 명세서[별지 제4호의2서식]"로 한다

17. 연구실 안전·보안 자산 및 (감가)상각비 명세서 [별지 제3호의17서식]

별표 2 및 별지 제3호의1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17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

1.운영수익

과목 (관 항 목)	해설
Ⅰ.산학협력수익	
1.연구수익	대가성이 있는 연구용역수익 ※ 대가성 판단기준 : 결과물의 소유권을 산학협력단이 취득하면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1)정부연구수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대가성이 있는 연구용역수익
2)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성이 있는 연구용역수익
2.교육운영수익	
1)교육운영수익	산학협력에 관련되는 수탁교육, 직업훈련과정, 계약학과 설치·운영 등 계약에 의한 교육운영수익
3.기술이전수익	
1)지식재산권이전수익	지식재산권의 대여 및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단, 출원 중인 지식재산의 대여 및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포함함
2)노하우이전수익	노하우의 대여 및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4.설비자산사용료수익	
1)설비자산사용료수익	설치된 연구 및 실험실습시설·장비 등의 사용료
2)임대료수익	토지및건물 등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 수입
5.기타산학협력수익	
1)기타산학협력수익	기타의 산학협력사업수익(산업자문 등)
2)학교기업 수익	학교기업의 수익 총액
Ⅱ.지원금수익	
1.연구수익	
1)정부연구수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대가성이 없는 연구용역수익
2)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성이 없는 연구용역수익
2.교육운영수익	
1)교육운영수익	교육운영수익 중 산학협력수익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운영수익
3.기타지원금수익	
1)기타지원금수익	기타의 지원금사업수익
Ⅲ.간접비수익	

과 목			해 설
관	항	목	
	1.산학협력수익		
		1)산학협력연구수익	산학협력 연구수익 중 간접비수익
		2)산학협력교육운영수익	산학협력 교육운영수익 중 간접비수익
		3)기타산학협력수익	기타산학협력수익 중 간접비수익
	2.지원금수익		
		1)지원금연구수익	지원금 연구수익 중 간접비수익
		2)지원금교육운영수익	지원금 교육운영수익 중 간접비수익
		3)기타지원금수익	기타지원금수익 중 간접비수익
Ⅳ.전입및기부금수익			
	1.전입금수익		
		1)학교법인전입금	학교법인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2)학교회계전입금	학교회계로부터 받는 전입금
		3)학교기업전입금	학교기업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4)기타전입금	기타 기관에서 전입되는 금액
	2.기부금수익		
		1)일반기부금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기부금
		2)지정기부금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
Ⅴ.운영외수익			
	1.운영외수익		
		1)이자수익	각종 예금의 이자수입
		2)배당금수익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장기투자금융자산 중 투자주식, 출자금에 대한 배당이익
		3)유가증권평가이익	단기매매금융자산의 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4)유가증권처분이익	단기매매금융자산 및 장기투자금융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5)외환차익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를 회수 또는 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6)외화환산이익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를 환산하는 경우로서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7)유형자산처분이익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8)대손충당금환입	매출채권, 미수금 등 채권에 대한 회수불능 추정계상액으로 기 계상한

과 목		해 설
관 항	목	
		충당금의 환입액
	9)전기오류수정이익	과연도 과다집행 분이 회수 조치되는 등 전기이전의 오류를 수정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
	10)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지 않고 환입하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환입하는 경우의 환입액
	11) 기타운영외수익	기타의 운영외수익
운영수익총계		

2. 운영비용

과목		해설
관	항 목	
Ⅰ.산학협력비		
	1.산학협력연구비	산학협력연구의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제 경비
	1)인건비	산학협력연구의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2)학생인건비	산학협력연구의 수행과 관련하여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3)연구시설·장비비	산학협력연구의 수행활동에서 발생하는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 사용료(자산화하는 금액은 제외함)
	4)연구활동비	산학협력연구의 수행활동에서 발생하는 연구활동비
	5)연구재료비	산학협력연구의 수행활동에서 발생하는 연구재료비
	6)연구수당	산학협력연구의 수행활동에서 발생하는 연구수당
	7)위탁연구개발비	산학협력연구의 수행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탁연구개발비
	2.교육운영비	산학협력교육과정(수탁교육, 직업훈련과정, 계약학과)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비용
	1)인건비	산학협력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의료, 수당 등
	2)교육과정개발비	산학협력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재개발비 교육프로그램개발비 등
	3)장학금	산학협력교육과정 이수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4)실험실습비	산학협력교육과정 이수학생의 실험실습비
	5)기타교육운영비	인건비, 교육과정개발비, 장학금, 실험실습비 이외의 교육운영비
	3.지식재산권비용	
	1)지식재산권실시·양도비	지식재산권의 운영, 기술이전, 사업화촉진 및 이전에서 발생하는 경비, 단, 자산화하지 않는 지식재산권 관련비용은 포함됨
	2)산학협력보상금	기술이전 및 산업체 교육등의 실질적인 산학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수익 중 이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교직원들에게 주는 인센티브(직무발명보상금 등)
	4.학교시설사용료	
	1)학교시설사용료	대학의 유·무형자산을 이용함에 따라 대학에 지급하는 비용
	5.기타산학협력비	
	1)인건비	기타 산학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의료, 수당 등
	2)기타산학협력비	인건비 이외의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학교기업 비용	학교기업의 비용 총액
Ⅱ.지원금사업비		지원금사업수행에서 발생하는 제 경비
	1.연구비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비
	1)인건비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2)학생인건비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와 관련하여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과목		해설
관 항	목	
	3)연구시설·장비비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에서 발생하는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 사용료(자산화하는 금액은 제외함)
	4)연구활동비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에서 발생하는 연구활동비
	5)연구재료비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에서 발생하는 연구재료비
	6)연구수당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에서 발생하는 연구수당
	7)위탁연구개발비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에서 발생하는 위탁연구개발비
2.교육운영비		지원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운영비
	1)인건비	지원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의료, 수당 등
	2)교육과정개발비	지원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재개발비, 교육프로그램개발비 등
	3)장학금	지원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 이수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4)실험실습비	지원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 이수학생의 실험실습비
	5)기타교육운영비	인건비, 교육과정개발비, 장학금, 실험실습비 이외의 교육운영비
3.기타지원금사업비		
	1)인건비	기타 지원금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의료, 수당 등
	2)기타지원금사업비	인건비 이외의 기타지원금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Ⅲ.간접비사업비		간접비수익을 재원으로 지출하는 제비용
1.인력지원비		
	1)인건비	연구지원인력 및 행정지원 전담요원의 인건비
	2)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자 및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3)연구개발준비금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등에 따라 연구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관련 경비
2.연구지원비		
	1)기관 공통비용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2)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의 운영경비
	3)기반시설·장비구축·운영비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4)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안전교육비, 보험료 등)
	5)학생산재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보험료
	6)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보안을 위한 필요경비(보안장비구입비, 보안교육비 등)
	7)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8)연구활동지원금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

과 목		해 설
관 항	목	
		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 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3.성과활용지원비		
	1)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홍보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2)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단, 지식재산권으로 자산화된 금액은 제외함)
4.기타지원비		
	1)기타지원비	간접비수익을 재원으로 지출하는 기타의 지원비
Ⅳ.일반관리비		
1.일반관리비		
	1)인건비	간접비수익 이외의 수익을 재원으로 하여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제수당, 법정부담금 등
	2)감가상각비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3)무형자산상각비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
	4)대손상각비	수취채권에 대한 회수불능추정 계상액
	5)일반제경비	간접비수익 이외의 수익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하는 기타의 일반관리비용
Ⅴ.운영외비용		
1.운영외비용		
	1)유가증권처분손실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장기투자금융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2)유가증권평가손실	단기매매금융자산을 평가한 결과 발생한 평가손실액
	3)외환차손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를 회수 또는 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4)외화환산손실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를 환산하는 경우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5)유형자산처분손실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6)전기오류수정손실	전기이전의 오류를 수정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
	7)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시 계상하는 비용계정
	8)기타운영외비용	기타 운영외비용
Ⅵ.학교회계전출금		산학협력단에서 학교회계(국공립대학은 대학회계, 사립대학은 교비회계)로 대가성 없이 지원하는 금액 및 전출하는 자산
운영비용합계		
당기운영차익 (또는 당기운영차손)		운영수익총계-운영비용합계
운영비용총계		

[별지 제3호의12서식]

매입채무명세서

(단위 : 원)

과목	거래처명	내역	금액	비고
외상매입금				
	계			
지급어음				
	계			
합계				

※ 기재상의 주의

1. 내역란에는 채무의 발생원인 내역을 간략히 기재한다.
2.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의17서식]

연구실 안전·보안 자산 및 (감가)상각비 명세서

<유형자산>

(단위 : 원)

과목	기초잔액	당기증가액	당기감소액	기말잔액	감가상각 누계액	미상각잔액	당기 감가상각비	비고
합계								

<무형자산>

(단위 : 원)

과목	취득원가	기초잔액	당기증가액	당기감소액	기말잔액	당기 상각비	비고
합계							

※ 기재상의 주의

1. 연구실 안전, 연구 보안 등의 목적으로 유·무형 자산·장비의 취득 시 구분하여 자산으로 등록 후 관리하여야 한다.
2. 1호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는 유·무형자산 및 (감가)상각에 대한 사항을 위 서식에 별도로 기재하되, [별지3의9] 유형자산명세서, [별지3의10] 무형자산명세서, [별지4의6] 유·무형자산(감가)상각비 명세서에는 상기내역을 포함한 합산 내역을 기재한다.
3. 자산에 대하여 재무상태표에 기재한 과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4. 자본적지출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취득원가의 수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당기증가액 또는 당기감소액을 당기증가액란 또는 당기감소액란에 괄호로 기재하고 증가의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5.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운영계산서

당기 20××년 ××월××일부터 20××년 ××월××일까지
전기 20××년 ××월××일부터 20××년 ××월××일까지

1. 운영수익

과 목	제 ××(당)기			제××(전)기		
관 항 목	목	항	관	목	항	관
Ⅰ.산학협력수익						
1.연구수익						
1)정부연구수익						
2)산업체연구수익						
2.교육운영수익						
1)교육운영수익						
3.기술이전수익						
1)지식재산권이전수익						
2)노하우이전수익						
4.설비자산사용료수익						
1)설비자산사용료수익						
2)임대료수익						
5.기타산학협력수익						
1)기타산학협력수익						
2)학교기업 수익						
Ⅱ.지원금수익						
1.연구수익						
1)정부연구수익						
2)산업체연구수익						
2.교육운영수익						
1)교육운영수익						
3.기타지원금수익						
1)기타지원금수익						
Ⅲ.간접비수익						
1.산학협력수익						
1)산학협력연구수익						
2)산학협력교육운영수익						
3)기타산학협력수익						
2.지원금수익						
1)지원금연구수익						
2)지원금교육운영수익						

과 목			제 ××(당)기			제××(전)기		
관	항	목	목	항	관	목	항	관
		3)기타지원금수익						
Ⅳ.전입및기부금수익								
	1.전입금수익							
		1)학교법인전입금						
		2)학교회계전입금						
		3)학교기업전입금						
		4)기타전입금						
	2.기부금수익							
		1)일반기부금						
		2)지정기부금						
		3)현물기부금						
Ⅴ.운영외수익								
	1.운영외수익							
		1)이자수익						
		2)배당금수익						
		3)유가증권평가이익						
		4)유가증권처분이익						
		5)외환차익						
		6)외화환산이익						
		7)유형자산처분이익						
		8)대손충당금환입						
		9)전기오류수정이익						
		10)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11) 기타운영외수익						
운영수익총계								

2. 운영비용

과 목			제××(당)기			제××(전)기		
관	항	목	목	항	관	목	항	관
Ⅰ.산학협력비								
	1.산학협력연구비							
		1)인건비						
		2)학생인건비						
		3)연구시설・장비비						
		4)연구활동비						
		5)연구재료비						
		6)연구수당						
		7)위탁연구개발비						
	2.교육운영비							
		1)인건비						
		2)교육과정개발비						
		3)장학금						
		4)실험실습비						
		5)기타교육운영비						
	3.지식재산권비용							
		1)지식재산권실시・양도비						
		2)산학협력보상금						
	4.학교시설사용료							
		1)학교시설사용료						
	5.기타산학협력비							
		1)인건비						
		2)기타산학협력비						
		3)학교기업 비용						
Ⅱ.지원금사업비								
	1.연구비							
		1)인건비						
		2)학생인건비						
		3)연구시설・장비비						
		4)연구활동비						
		5)연구재료비						

과 목			제××(당)기			제××(전)기		
관	항	목	목	항	관	목	항	관
		6)연구수당						
		7)위탁연구개발비						
	2.교육운영비							
		1)인건비						
		2)교육과정개발비						
		3)장학금						
		4)실험실습비						
		5)기타교육운영비						
	3.기타지원금사업비							
		1)인건비						
		2)기타지원금사업비						
Ⅲ.간접비사업비								
	1.인력지원비							
		1)인건비						
		2)연구개발능률성과급						
		3)연구개발준비금						
	2.연구지원비							
		1)기관 공통비용						
		2)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3)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4)연구실안전관리비						
		5)학생산재보험료						
		6)연구보안관리비						
		7)연구윤리활동비						
		8)연구활동지원금						
	3.성과활용지원비							
		1)과학문화활동비						
		2)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4.기타지원비							
		1)기타지원비						
Ⅳ.일반관리비								
	1.일반관리비							

과 목			제××(당)기			제××(전)기		
관	항	목	목	항	관	목	항	관
		1)인건비						
		2)감가상각비						
		3)무형자산상각비						
		4)대손상각비						
		5)일반제경비						
Ⅴ.운영외비용								
	1.운영외비용							
		1)유가증권처분손실						
		2)유가증권평가손실						
		3)외환차손						
		4)외화환산손실						
		5)유형자산처분손실						
		6)전기오류수정손실						
		7)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8)기타운영외비용						
Ⅵ.학교회계전출금								
운영비용합계								
당기운영차익 (또는 당기운영차손)								
운영비용총계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일부개정고시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운영수익의 인식) ① (생 략)	제25조(운영수익의 인식) (현행 제1항과 같음)
제28조(자산의 평가기준) ① ~ ③ (생 략) <신 설>	제28조(자산의 평가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산학협력단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감가상각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제32조(감가상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별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다.
제38조(부속명세서)①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부속명세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1. ~ 16. (생 략) <신 설> 17. 기타 필요한 명세서 ②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제38조(부속명세서)① ----------. 1. ~ 16. (현행과 같음) 17.연구실 안전·보안 자산 및 (감가)상각비 명세서 [별지 제3호의17서식] 18. 기타 필요한 명세서 ② ----------. ----------

없는 부속명세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지식재산권 수익명세서 [별지 제4호의2서식] 3. ~ 8. (생 략)	----------. 1. (현행과 같음) 2. 기술이전수익 명세서 [별지 제4호의2서식] 3. ~ 8. (현행과 같음)